

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환급내역 통보서

년 월 신고분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주한외교관·외교공관용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환급 결정내역

※ 법령개정 등 세율 변경시 변경전·후 구분 작성

일련 번호	환급세액					환급세액
	법 인 명	사업자등록번호	전화번호	환급계좌		
				계좌번호	금융기관명	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4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주한외교관·외교공관용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환급세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세무서장

(서명 또는 인)

울산광역시장 귀하

※ 울산광역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4제7항)